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4. . . (제 회)	

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문기 (미래창조과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별정우체국법」이 개정(법률 제12721호, '14. 6. 3. 공포, '14. 9. 4. 시행)됨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함(안 제3조제2항)

○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(8천만원)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

나. "체신청"을 "지방우정청"으로 명칭을 변경함

○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'체신청'의 명칭을 '지방우정청'으로 정비함

다.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(제16조제1항 및 제3항)

○ 별정우체국 직원의 폐지된 직급(사무보조, 집배10급)을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미래창조과학부령 제　　호

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법 제5조제6호에서”를 “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”로 한다.

제1조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7조, 제8조, 제11조 단서, 제12조 후단,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, 제17조,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“체신청장”을 각각 “지방우정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, 제6조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전단 중 “관할체신청장”을 각각 “관할지방우정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”를 “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의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급하되, 업무보조원 1인당 보조비는 「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 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.”를 “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) 체신청장은 「별정우체국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 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	제1조(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. 제2조(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)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 략) ②(생 략)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	제1조(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. 제2조(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) ① -----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할지방우정청장----------.

제3조(신청인 등의 자산) ① (생 략)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"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.	제3조(신청인 등의 자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----------.
제4조(실사조서의 작성)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4조(실사조서의 작성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.
제5조(지정서의 발부) 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 ② (생 략)	제5조(지정서의 발부) ① 지방우정청장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해지통보)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(해지통보) ----------관할지방우정청장----------.
제7조(업무인수계획 수립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7조(업무인수계획 수립) ----------지방우정청장----------.
제8조(지정의 취소사유보고)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8조(지정의 취소사유보고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.
제9조(승계지정의 신청)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 략) ② (생 략)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	제9조(승계지정의 신청) ① ----------관할지방우정청장-----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할지방우정청장----------

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제11조(시설등의 기준)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	제11조(시설등의 기준)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.
제12조(시설 등 확인)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 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	제12조(시설 등 확인) ---------- ---------- 관할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------ 지방우정청장--- ----------.
제16조(사무비) ①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.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, 수입,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. ②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	제16조(사무비) ① 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4호의 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지방우정청장----------

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 ③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, 업무보조원 1인당 보조비는 「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 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③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업무취급수수료)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,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.	제17조(업무취급수수료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8조(피복류의 지급)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.	제18조(피복류의 지급)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제19조(물품의 교부) ①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. ②(생 략)	제19조(물품의 교부) ① 지방우정청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95 - 1161